

창원지방법원 2021. 11. 5 선고 2020나5457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형란, 김주혜

피고, 피항소인 B조합

변 론 종 결 2021. 10. 1.

판 결 선 고 2021. 11. 5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. 3. 10. 선고 2019가단193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8,016,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13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“2002. 10. 23.”을 “2000. 10. 23.”로 고치고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의 직원 C가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000. 10. 23.자 대출(7,000,000원) 및 2002. 4. 11.자 대출(20,000,000원)을 실행하였고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각 담보대출’이라고 한다), 2000. 10. 23.자 대출금 중 5,200,000원은 G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무단 지급하였으며, 이 사건 각 담보대출금의 이자도 G 명의 통장에서 납부되었고, 원고는 이 사건 각 담보대출의 실행과 이자 납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, 이 사건 각 담보대출은 불법대출로서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담보대출금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1997. 3. 29.자 및 2000. 10. 23.자 각 근저당권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각 근저당권’이라고 한다)의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므로,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잉여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(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명의로 설정된 2009. 6. 8.자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무효이므로,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F이 후순위 배당권자로서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).

나. 판단

1)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(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다카10484 판결 등 참조),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

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(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).

2) 을 제1~8, 12, 13, 19,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담보대출 당시 원고는 자필로 대출거래약정서,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계약서 등에 서명한 사실, 원고는 2000. 10. 23.자 대출 신청 당시 용도를 ‘가계자금’으로 기재하였고, G은 위 대출을 연대보증하였으며, 2000. 10. 23.자 대출금 7,000,000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5,200,000원이 같은 날 G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, 원고는 2002. 4. 11.자 대출 신청 당시 용도를 ‘가사용’으로 기재하였고, 대출금 20,000,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담보대출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,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처분문서의 기재를 뒤집고 피고 측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담보대출을 무단으로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. 그 밖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양상익, 판사 전보경, 판사 김희수